

SAg.c.8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지회장 허 명 춘

## 1. 인권법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룰 수 없는 이유

1. 의문사 진상규명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근 위원들이 선임되기 어렵다.

의문사는 한 건 한 건 진상규명 될 때 그 파급력이 국가 전체에 미칠 정도로 엄청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조속히 해결하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원이 사건들을 나누어 밀도 있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안은 인권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만 상근하기로 되어 있기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들이 선임되기 어렵다.(인권법안 제21조) 19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7만 여건으로, 인권위가 설치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의 상당수가 인권위로 사건을 접수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4인이 상근할 경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행정상의 요식행위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제2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

2. 조사 대상을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으로 한정하였기에 노동운동, 학생운동 과정에서 기업주, 사학재단 등에 의해 자행된 의문의 죽음은 애초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인권법안 제40조 제1호, 제3호)

예) 기업주 관련 :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후지카 대원전기 오범근, 광무택시 문용섭, 금성사 배중손, 협신사 이재호 등. 사학재단 관련 : 동우전문대 김용갑

의문사에 해당된다는 내용인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의결 기준이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인권법안 제40조 제3호) -군대내 의문의 죽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

3.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권법안 제44조 제1호) - 의문의 죽음 대부분이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되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군대내 의문의 죽음의 경우 군 조직의 특성상 함께 군복무를 한 동료들이 제대한 이후에야 타살 됐음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법안 제48조 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의 내용에는 수사·재판·형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대부분의 사건이 수사·재판·형집행 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조사 할 사안이 없게 된다.

4.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경우 진정을 각하하게 되어 있어 과거 정권 당시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없다.(인권법안 제44조 제7호)

의문의 죽음은 아니지만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 등 사법살인의 경우 확정 판결되었기에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문의 죽음이 경우에도 이내창 사건이 한겨레 이공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일이 있다.

5. 조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으로 정하였으나 조사의 한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려 할 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올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와 실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관계기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인권법안 제48조 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많은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 작위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2) 수사·재판·형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아닌, 기왕의 사

건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인권위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 수사에 착수하여 시간을 끌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현재 국방부특조단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죽음 사례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가) 진행중인 범죄수사 또는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에 대한 가혹행위나 살해의 경우 이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자의 명예는 당연히 실추되는 것인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문사 진상규명의 경우 양심선언자 보호규정과 나아가 조수보호법, 산림법, 수산법, 관세법 등 161개의 현행 법령에도 있는 포상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나 이에 대한 조문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규정을 정하였다.)

다)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물론이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방법상의 기밀이므로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정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벌칙 조항도 없는 구제조치 권고나 의견 표명으로 그치고 있으며(인권법안 제57조) 조치 결과나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조항이 있으나(인권법안 제64조) 이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된다.

## 2.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권법으로는 의문사 진상규명은 커녕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인권법에서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수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별도의 장을 두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수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문의 죽음, 특히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이 갖는 특성이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고 개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인권법에서 다루기보다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그동안 의문의 죽음이 진상규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차원에서 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은 진상규명 요구를 막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집권하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1년 동안 쉬지 않고 유가족들과 동료들이 진상규명 요구 투쟁을 하였지만 기만적인 인권법을 만들어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있어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 전제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권이 말로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다.

1) 과거 정치적 의문사를 자행했던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제한없는 수사권을 갖는 법적 장치와 주체를 세워야 한다. 이는 그 동안 민간 차원은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2)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처벌의 방식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프랑스의 비국민제도와 같은 사회적 처벌을 하여 다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치적 의문사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즉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민주적인 기관으로의 개편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양심 선언자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양심선언자와 마지못해 자백을 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대 인권침해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이들이 가해자 집단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와, 주변에 자신의 죄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